

## 교직원보수규정

2000.03.01.제정	2001.03.01.일부개정	2002.04.01.일부개정	2004.03.01.일부개정
2005.01.07.일부개정	2006.01.01.일부개정	2006.03.01.일부개정	2006.04.01.일부개정
2006.08.01.일부개정	2007.05.01.일부개정	2007.06.20.일부개정	2007.01.01.일부개정
2007.09.28.일부개정	2007.12.23.일부개정	2007.12.31.일부개정	2008.03.01.일부개정
2009.09.01.일부개정	2011.01.01.일부개정	2012.07.22.일부개정	2012.11.01.일부개정
2013.03.01.일부개정	2013.05.01.일부개정	2016.01.01.일부개정	2016.04.21.일부개정
2016.08.30.일부개정	2018.04.24.일부개정	2018.06.22.일부개정	2019.03.20.일부개정
2020.09.23.일부개정	2020.12.22.일부개정	<b><u>2025.11.01.일부개정</u></b>	

<개정혁신팀>

###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 <2007.9.28.>

③ 2009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정년트랙전임교원은 **성과연동호봉제**를 적용하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9.1., 개정 2016.1.1., 2020.12.22., **2025.11.1.**)

④ 비정년트랙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조교, 계약직원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1.)(개정 2020.12.22.)

**제 3 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직원”이라 함은 교원과 일반직원을 말한다.
2. “교원”이라 함은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개정 2012.7.22., 2016.1.1.)
3. “일반직원” (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일반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일반직, 기술직을 말한다. (개정 2013.3.1., 2016.1.1.)
4. 삭제 <2007.9.28.>
5. 삭제 <2007.9.28.>
6.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구분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 교직원의 본봉을 말한다.
7.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8.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 급여를 말한다.

9.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보수의 약정)** 신규임용된 교직원은 임용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 보수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보수의 책정)** ① 총장은 학년도말에 신학년도에 예측되는 물가수준과 공무원보수인상 및 타 대학교의 보수수준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를 책정하여 법인이사회에 제출한다.  
② 책정된 보수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1.)

## 제2장 봉 급

**제 6 조(교직원의 봉급)** ① 교직원의 봉급월액은 「교원 및 직원인사규정」이 정하는 직종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 본 규정의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

1. 교원 : [별표1] (개정 2016.1.1., 2016.8.30.)
2. 일반직원 : [별표2] (개정 2016.1.1., 2016.8.30.)
3. 삭제 <2016.1.1.>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4.3.1.)

**제 7 조(강임시 봉급보존)**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전의 호봉보다 낮아지게 될 경우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호봉의 봉급액보다 많아질 때까지 종전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제 8 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교직원은 신규임용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제2조 제3항에 따른 교원**의 신규임용시 초임 호봉은 「전임교원성과연동호봉제운영규정」에 의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3.3.1., 2025.11.1.)

③ 직원의 초임호봉은 「직원인사규정」 제31조 제1항을 준용하되,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차기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3.3.1., 2016.4.21.)

④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제 9 조(호봉의 재획정)** ① 교직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할 수 있다.

1.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될 경우
2.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승진시 호봉재획정)** ① 교직원의 승진시에는 승진된 직급에서 호봉을 재획정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재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28] “승진시 호봉획정표”를 준용하며, [별표4]와 같다.

**제11조(근속가봉)** 삭제 <2006.3.1.>

**제12조(정기승급)** ① 교직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최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휴직 및 직위해제의 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교직원의 호봉승급은 매년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자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인사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을 제한받고 있는 직원은 1회에 한하여 승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3조(승급기간의 특례)** 「직원인사규정」 제35조는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공무상의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제14조(특별승급)**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원 및 직원인사규정」과 「교직원포상규정」에 의거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 제4장 보수지급

**제15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7.9.28.)

② 출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수지급일)** ① 교직원에 대한 보수는 월급으로 지급하며, 매월 17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학교사정에 의한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총장은 그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원단위는 절상한다.

(개정 2006.3.1.)

②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년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07.9.28, 2013.3.1.)

③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중의 보수는 정직은 보수의 전액을 감하고, 감봉은 보수의 1/3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9.9.1.)(개정 2020.9.23.)

**제18조(겸직자의 보수)** 교직원의 겸직에 대하여는 그 직위중 보수가 많은 직위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19조(휴직 및 직위해제, 대기발령기간의 보수)** ① 휴직중인 교직원의 보수는 「정관」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상으로 인해 휴직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3.1.)

②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중인 교직원의 보수는 「정관」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1.)

③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1.)

**제20조(파견기간의 보수)** ① 교직원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연수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해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내외 교육기관, 연구기관, 해외파견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될 경우의 보수지급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② 교직원이 법인 또는 법인산하 타 기관에 파견될 경우에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21조(결근기간의 보수감액)** 일반직원 가운데 복무규정의 개인별 연가일수를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간주하며,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해서는 보수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3.1.)

## 제5장 수 당

**제22조(수당의 지급)**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

**제23조(연구보조비)**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5]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매월 연구보조

비를 지급한다.

**제24조(업무연구비)**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매월 업무연구비를 지급한다.

**제25조(교과연구비)**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7]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교과연구비를 지급한다.

**제26조(장기근속수당)**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8]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1.3.1.)

**제27조(정액급식비)**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매월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제28조(업무교통비)** 삭제 <2011.1.1.>

**제29조(학사지도비)** 삭제 <2001.3.1.>

**제30조(직급보조비)**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매월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제31조(보직수당)** 교직원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보직에 임명된 자에게는 보직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1.)

**제32조** 삭제 <2013.3.1.>

**제33조(관리업무수당)**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5]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의 9%를 매월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5.1.7., 2006.1.1.)

**제34조(기말수당)** 삭제 <2006.1.1.>

**제35조(정근수당)** 삭제 <2011.3.1.>

**제36조(가계지원비)** 삭제 <2011.1.1.>

**제37조(명절휴가비)** 삭제 <2011.3.1.>

**제38조(특별연구비)** 삭제 <2011.3.1.>

**제38조의 2(상여수당)** ① 교직원에게는 봉급의 30%를 매월 상여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명절(설,

추석)에는 봉급의 30%를 추가 지급한다. (개정 2006.1.1.)

- ② 명절(설, 추석)에 추가로 지급하는 상여수당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교직원에 한하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총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신설 2016.1.1.)(개정 2016.4.21.)

**제39조(성과상여금)**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성적, 업적 등에 따라 보수지급일에 [별표2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율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의 2(특별상여금)** ① 매 회계연도 등록금수입 확정 이후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특별상여금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률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6.1.1.]

**제40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별표22]에 의하여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 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1.1., 2018.6.22.)

- ② 제1항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교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형편이나 교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교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교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3.1.)

- ④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조개정 2007.1.1.)

**제40조의 2(보육수당)** ① 영유아(만 5세이하)를 둔 교직원에 대하여 매월 자녀 1인당 7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하며, 자녀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정부보육료를 지원받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일 경우 그 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③ 보육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2.11.1.]

**제41조(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표23]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3월, 6월, 9월, 12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1.)

② 자녀 학비보조수당에 관하여는 제40조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

**제41조의 2(육아휴직수당)** ① 30일 이상 육아휴직한 교직원에 대하여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한다. 단, 수당의 100분의 1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08.1.1., 2018.6.22., 2019.03.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7.9.28.]

**제42조(특수업무수당)** 직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2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매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43조(위험근무수당)** 직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25]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매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11.00.)

**제44조(당직근무수당)** 근무명령에 의하여 「교직원복무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의 당직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4.21.)

**제45조(초과강의수당)** 전임교원 중에서 책임시간 이외의 수업을 한 교원에 대하여 초과강의수당을 지급하며, 이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6조(시간외 근무수당)** 근무명령에 의하여 「교직원복무규정」 제7조 소정의 근무시간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9.28.)

**제46조의 2(입시수당)** 입시관리에 종사한 교직원에게 수험료수입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시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6.1.1.]

**제46조의 3(연구수당)** 대형 국고사업유치 수행 집필팀 및 학교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 집필팀에 대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6.1.1.]

**제 46 조의4(발전기금유치수당)** 발전기금을 유치한 교직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4.24.]

**제47조(명예퇴직수당)** 「정관」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에게 적용하는 명예퇴직수당은 따로 규정을 둔다.

## 제6장 기타사항

**제48조(퇴직금)** 교직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9조(공무로인한 부상과 사망)** 공무에 의한 부상 및 사망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 제7장 보 칙

**제50조(준용)** ①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② 호봉획정의 기준, 경력산출 등의 기준은 「교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의 「교원보수규정」과 「직원보수규정」, 「직원수당규정」 등은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

##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① 본 개정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가봉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호봉(33호봉) 봉급액이 본 개정규정 시행일 직전의 봉급액과 근속가봉을 합한금액을 초과할 때까지 개정규정 시행일 직전의 봉급액과 근속가봉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상여금 부분을 본봉에 산입할 경우에는 상여금을 포함 계산한다.

② (구)동명대학 교직원 보수에 관한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2006.2.2.)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0조 및 제41조의 2, [별표22]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6조, 제31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

38조의 1, [별표5], [별표8], [별표13], [별표17], [별표19], [별표20]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제1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6조 제1항 [별표1],[별표2]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46조의 4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제40조의 1항 및 [별표22]는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제41조의2 1항은 2018년 5월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41조의2 제1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6.1.1., 2016.4.21., 2016.8.30.)

## 교원의 봉급표(제6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862,900	18	3,287,600
2	1,920,000	19	3,398,100
3	1,977,400	20	3,507,400
4	2,034,500	21	3,617,100
5	2,092,000	22	3,726,600
6	2,154,800	23	3,869,700
7	2,217,600	24	4,012,300
8	2,280,700	25	4,154,700
9	2,375,300	26	4,297,200
10	2,469,900	27	4,439,600
11	2,564,700	28	4,582,000
12	2,659,000	29	4,690,300
13	2,753,000	30	4,798,900
14	2,847,300	31	4,907,100
15	2,957,800	32	5,015,400
16	3,068,000	33	5,123,800
17	3,177,700	특1호	7,307,300

[별표2] (개정 2016.1.1., 2016.8.30.)

일반직원의 봉급표(제6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계급· 직무등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1	3,563,000	3,212,600	2,903,200	2,495,400	2,235,400	1,852,800	1,667,800	1,492,500	1,332,800
2	3,686,100	3,329,900	3,008,800	2,595,300	2,323,700	1,936,600	1,741,600	1,562,500	1,398,600
3	3,812,400	3,448,700	3,117,500	2,696,800	2,415,300	2,023,200	1,819,700	1,636,400	1,468,300
4	3,941,500	3,568,900	3,227,000	2,800,600	2,510,500	2,111,700	1,901,800	1,711,700	1,542,200
5	4,073,700	3,690,400	3,338,300	2,905,900	2,608,300	2,202,600	1,986,800	1,790,200	1,616,700
6	4,207,500	3,812,300	3,450,700	3,012,200	2,708,100	2,296,200	2,074,000	1,870,500	1,692,900
7	4,343,400	3,935,700	3,564,300	3,119,400	2,809,500	2,390,000	2,161,800	1,951,300	1,765,900
8	4,480,500	4,059,100	3,678,300	3,227,300	2,912,000	2,484,100	2,249,900	2,028,500	1,836,300
9	4,619,200	4,183,200	3,793,300	3,335,400	3,014,900	2,578,500	2,333,800	2,102,500	1,903,700
10	4,759,000	4,307,300	3,908,200	3,443,400	3,118,600	2,667,100	2,414,000	2,172,300	1,968,400
11	4,898,500	4,431,900	4,023,200	3,552,400	3,215,200	2,751,100	2,489,600	2,240,000	2,030,300
12	5,042,500	4,560,700	4,142,600	3,654,900	3,308,500	2,833,800	2,563,700	2,306,200	2,091,600
13	5,187,400	4,690,500	4,253,500	3,751,000	3,397,200	2,911,500	2,634,200	2,369,800	2,150,500
14	5,332,800	4,807,800	4,356,300	3,840,500	3,479,900	2,985,000	2,701,700	2,430,500	2,207,600
15	5,459,800	4,916,100	4,451,100	3,924,800	3,557,900	3,055,600	2,766,000	2,488,800	2,262,300
16	5,572,400	5,015,400	4,539,600	4,004,200	3,631,400	3,121,700	2,827,000	2,545,000	2,315,200
17	5,672,400	5,106,800	4,621,800	4,078,000	3,700,500	3,184,800	2,885,500	2,597,600	2,366,900
18	5,761,600	5,190,000	4,698,200	4,147,000	3,765,800	3,244,600	2,941,400	2,648,700	2,415,100
19	5,841,300	5,267,200	4,768,900	4,211,400	3,827,300	3,301,100	2,993,900	2,697,600	2,462,400
20	5,912,800	5,337,600	4,835,000	4,271,600	3,884,800	3,354,400	3,044,100	2,744,300	2,507,400
21	5,978,600	5,401,800	4,896,200	4,327,900	3,939,000	3,405,700	3,092,000	2,788,900	2,550,000
22	6,037,300	5,460,900	4,952,900	4,380,700	3,989,900	3,453,800	3,137,100	2,831,700	2,590,900
23	6,086,800	5,514,900	5,005,400	4,430,200	4,038,000	3,499,000	3,180,800	2,872,400	2,629,800
24		5,559,000	5,054,200	4,476,700	4,082,900	3,542,200	3,222,300	2,911,700	2,667,200
25		5,601,200	5,094,500	4,519,500	4,125,300	3,583,200	3,261,500	2,948,900	2,702,800
26			5,132,700	4,555,600	4,165,300	3,621,900	3,299,100	2,985,200	2,735,000
27			5,168,400	4,589,100	4,198,500	3,658,700	3,331,000	3,015,300	2,762,800
28				4,620,900	4,230,400	3,689,500	3,360,700	3,044,400	2,789,600
29					4,259,700	3,718,400	3,389,500	3,071,800	2,815,400
30					4,288,100	3,746,900	3,416,700	3,098,500	2,840,400
31						3,773,200	3,442,600	3,124,300	2,865,000
32						3,798,200			

[별표4] 승진시 호봉재획정표 (개정 2013.5.1.)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1	1(0)	11	10(-1)	22	21(-1)
2	1(-1)	12	11(-1)	23	22(-1)
3	2(-1)	13	12(-1)	24	23(-1)
4	3(-1)	14	13(-1)	25	24(-1)
5	4(-1)	15	14(-1)	26	25(-1)
6	5(-1)	16	15(-1)	27	26(-1)
7	6(-1)	17	16(-1)	28	27(-1)
8	7(-1)	18	17(-1)	29	28(-1)
9	8(-1)	19	18(-1)	30	29(-1)
10	9(-1)	20	19(-1)	31	30(-1)
-	-	21	20(-1)	32	31(-1)

[별표5] 연구보조비 (개정 2004.3.1., 2007.12.23., 2008.3.1., 2011.3.1., 2012.7.22.)

지급대상	지급액(원)
총 장	3,200,000
교 수	1,380,000
부 교 수	1,310,000
조 교 수	1,180,000

[별표6] 업무연구비 (개정 2016.1.1.)

구분	일반직, 기술직	금액
직원	3급	870,000
	4급	870,000
	5급	870,000
	6급	810,000
	7급	750,000
	8급	690,000
	9급	530,000

[별표7] 교과연구비 (개정 2004.3.1., 2012.7.22.)

구분	지급액(원)
총장	(삭제 2004.3.1.)
조교수이상 전교원	200,000

[별표8] 장기근속수당 (개정 2011.3.1.)

지급대상	근무연수	지급액(원)
교직원	25년이상	130,000
	20년이상-25년미만	110,000
	15년이상-20년미만	80,000
	10년이상-15년미만	60,000
	5년이상-10년미만	50,000

[별표9] 정액급식비 (개정 2005.1.7.)

구분	지급액(원)
교직원	130,000

[별표10] 업무교통비 삭제 <2011.1.1.>

[별표11] 학사지도비 삭제 <2001.3.1.>

[별표12] 직급보조비 (개정 2016.1.1.)

구분	일반/기술직	금액
직원	3급	500,000
	4급	400,000
	5급	250,000
	6급	155,000
	7급	140,000
	8급	105,000
	9급	105,000

[별표13] 보직수당 삭제 <2011.3.1.>

[별표14] 책임교수수당 (개정 2004.3.1.), 삭제 <2013.3.1.>

[별표15] 관리업무수당 (개정 2005.1.7., 2006.1.1.)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직원	3급	봉급월액의 9%
	4급	봉급월액의 9%

[별표16] 기말수당 삭제 <2006.1.1.>

[별표17] 정근수당 삭제 <2011.3.1.>

[별표18] 가계지원비 삭제 <2011.1.1.>

[별표19] 명절휴가비 삭제 <2011.3.1.>

[별표20] 특별연구비 삭제 <2011.3.1.>

[별표21] 성과상여금

구분	지급기준	비고
교직원	봉급월액+연구보조비(업무연구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업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지급시기와 지급율은 총장이 따로 정함

[별표22] 가족수당 (개정 2005.1.7., 2007.1.1., 2008.1.1., 2013.5.1., 2018.06.22.)

구분	적용대상	지급액(원)	
교직원	배우자	40,000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인당	20,000	
	자녀(둘째)	40,000	
	자녀(세째부터)	2011.12.31.이전 출생	70,000
		2012. 1. 1.이후 출생	100,000

[별표23] 학비보조수당 (개정 2007.1.1., 2013.3.1.)

구분	적용대상	적용월	지급액
교직원	고등학교 취학자녀	3월	해당 교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에 기재된 학비 전액. 단, 사립 학교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역에 소재한 국.공립 고등학교의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6월	
		9월	
		12월	

[별표24] 특수근무수당 (개정 2016.1.1.)

구분	지급액(원)	비고
전산업무수당	20,000	해당부서 근무자로 자격증 소지자
사서수당	20,000	
총장기사운전수당	100,000	
출납수당	50,000	해당부서 근무자

[별표25] 위험근무수당 (개정 2008.3.1., 2016.1.1.)

구분	지급액(원)	비고
전기안전관리사	50,000	법정 선임자
전기안전관리원	20,000	법정 선임자
오수정화시설관리자	50,000	법정 선임자
소방안전관리자	50,000	법정 선임자
도시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30,000	법정 선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30,000	법정 선임자

[별표26] 당직수당 삭제 <2016.1.1.>

[별표27] 시간외 근무수당 삭제 <2007.9.28.>